

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6. 5. 27.>

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(제6조제1항 관련)

1. 도안 모형


본 제품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. 1. 신기술 지정번호: 2. 신기술 명칭: 3.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(略號): 4.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: 20 . . . ~ 20 . . .

2. 도안 요령

- 가. 크기: 표시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, 포장용기의 크기·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.
- 나. 색상: “Ne”와 “T”의 외곽선, “신기술지정”, “New Excellent Technology”는 검정색, “T”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%로 하고, 태극은 전자청색(DIC No. 142)으로 한다. 다만,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.